

# 「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낙관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: 김근한 의원 외 6인

## 3. 제안이유

- 구미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·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4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 등(안 제1조~제4조)
- 기본계획 수립, 지원사업, 위원회 설치 등(안 제5조~제10조)
- 지도·감독, 사무의 위탁(안 제11조~제12조)

## 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제2조, 제9조
  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
  - 「통계법」 제22조

## 6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·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디자인전문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.
- 또한, 구미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됨.